〈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u> 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0074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0.06.1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3.06.27.

홈페이지: 마담떡볶이앤치킨.COM Email:

dongdong091560@naver.com

[마담떡볶이앤치킨] 정보공개서

마음담음 가맹사업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마음담음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68, 301호(천호동)

전화: 070-8064-8912 팩스: 050-4167-9938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본사(070-8064-8912)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 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 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o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	주 소	
	마담떡볶이앤치킨 외	1 서울시	Ⅰ 강동구 상	암로 68, 3013	호(천호동)
주식회사 마음담음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전 대표팩스번호
구식회사 미급급급	2020.02.13.	2020.02.18	장미숙	070-8064-89	12 050-4167-9938
	법인등록번호	110111-73883	02 사업지	다등록번호	746-81-0176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o 당사의 특수관계인 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마담떡볶이앤치	서울시 깅	·동구 상암로 68, 3	801호(천호동)		
대표자	장미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킨 외1	장미숙	070-8064-8912	050-4167-9938	
		미다떠ㅂ		미다면 비이에비	서울시 깅	·동구 상암로 68, 3	01호(천호동)
이사	배종민	마담떡볶이앤치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킨 외1	장미숙	070-8064-8912	050-4167-993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o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마담떡볶이앤치킨]이라 합니다)의 내용

ㅇ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마담떡볶이앤치킨	맛있는 음식에 마음을 담다
상 호	마담떡볶이앤치킨 00점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 제 40-2020-0060216 호 등록번호: 제 40-1742-760000 호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123,949	144,823	-20,874	1,097,042	-171,917	-172,419
2022	257,379	105,834	151,545	1,970,641	-32,569	-30,839
2021	298,441	116,056	182,385	1,724,893	104,547	93,974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직전연도까지는 마담떡볶이앤치킨로 가맹사업을 하였으며 당사의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 하는 정육 및 부자재등 도매 매출액과 가맹비 및 교육비 매출액으로 구성 됩니다. 마담치킨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ㅇ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교단어구	이금	한 역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장미숙	대표 이사	2020. 02 ~ 현재	㈜ 마음담음 대표이사	가맹사업 및 경영총괄		
관련임원	배종민	이사	2020. 02 ~ 현재	㈜ 마음담음 이사	경영 지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ㅇ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 수(명)
시엄	상근	비상근	역전 ㅜ(형)
2023년 12월 31일	2	0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마음담음	가맹사업 경영	2022.05.23. ~ 현재	마담치킨(등록번호:20220438) 영업표지의 기타외식 가맹사업 경영

마담치킨은 2022년 5월 23일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ㅇ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해당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20.04.10. 출원 2021.06.21. 등록	출원번호 제 40-2020-0060216 호 등록번호 40-1742-760000	장미숙	2031.06.21.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o 당사는 위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마담떡볶이앤치킨 가맹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을 하였으며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되면 사용계약도 자동갱신됩니다.
- o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ㅇ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Π. 가맹본부의 마담떡볶이앤치킨 가맹사업 현황

1. [마담떡볶이앤치킨]을 시작한 날 : 2020년 2월 18일

2. [마담떡볶이앤치킨]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마음담음	마담순살 떡볶이	장미숙	2020년 2월 18일 ~ 2023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68, 301호(천호동)
주식회사 마음담음	마담치킨앤떡 볶이	장미숙	2023년 4월 6일 ~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68, 301호(천호동)

3. [마담떡볶이앤치킨] 업종

영업표지	업종			
미니다면 보이에 비카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마담떡볶이앤치킨	기타외식	떡볶이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마담떡볶이앤치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3.12.3	1		2022.12.3	1		2021.12.3	31
시작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2	12	-	17	17	-	16	16	-
서울	4	4	-	5	5	-	7	7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1	1	-	1	1	-	1	1	-
광주	1	1	-	3	3	-	1	1	-
대전	-	-	-	-	-	-	-	-	-
세종	-	-	-	-	-	-	-	-	-
울산	-	-	-	-	-	-	-	-	-
경기	4	4	-	4	4	-	3	3	-
강원	-	-	-	1	1	-	2	2	-
충북	1	1	-	1	1	-	2	2	-

충남	-	-	-	-	-	-	-	-	-
전북	1	1	-	1	1	-	-	-	-
전남	-	-	-	1	1	-	-	-	-
경북	-	-	-	-	-	-	-	-	-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마담떡볶이앤치킨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	17	2	6	1	4	12
2022	16	5	-	4	4	17
2021	8	8	-	-	2	16

6. 마담떡볶이앤치킨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①	가민	생점/직영점의	수 ②
一下正	· 6오/이금	OH포시	등록번호	ᆸᅙᅟ	2023.12.31	2022.12.31	2021.12.31
가맹본부	(주)마음담음	마담치킨	20220438	치킨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ㅇ 마담떡볶이앤치킨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	023년 가맹	점사업자의	의 연간 평균	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연간 평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평균 (하한)	비고	
	7188 T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2	229,938	11,987	401,343	20,067	127,573	5,416	산출: 11곳	
서울	4	238,952	14,934	401,343	20,067	127,573	10,631	산출: 4곳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전	-	-	-	-	-	-	-	-	
세종	-	-	-	-	-	-	-	-	
울산	-	-	-	-	-	-	-	-	
경기	4	245,593	13,644	335,706	17,781	134,359	7,071	산출: 3곳	
강원	-	-	-	-	-	-	-	-	
충북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	-	-	-	-	-	-	-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가맹점의 매출액은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한 물류공급액을 토대로 추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마담떡볶이앤치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마담떡볶이앤치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2개	915일 (2년 5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없음)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지역본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o 당사에서 2023년에 마담떡볶이앤치킨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단은 구분이 어려워 기재하지 않았고 근거는 손익계산서입니다.

구분	수단	기간	(단위: 경	지출 비용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96,623	96,623	-	-
광고선전비	-	연중	6,346	6,346	-	-
판매촉진비	-	연중	90,277	90,277	-	-

11. 가맹금 예치

o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암사역 지점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67(암사동)	02-2197-8944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날 까지 예치 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 방법은 국민은행 담당 지점 또는 전국 국민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예치 하시면 됩니다.

단, 예치금의 반환승인, 지급승인, 지급보류 등록 및 해제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등록 하셔야 하며, 국민은행 영업점에서는 거래가 불가능 합니다.

가맹금 예치제도 이용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로그인(www.kbstar.com)-->기업-->기업서비스-->가맹금예치제도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 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o 귀하가 마담떡볶이앤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	해당 없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700]				
가맹비	5,500	계약 체결후 7일 이내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계약금 성격의 금전	
교육비	2,200	교육 시작 이전	교육 전 계약해지 시	교육시작 후	

- 2) 당사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7,700
가맹비	5,500
교육비	2,2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가맹본부	33,000	3,300			33m²(10평) 기준
인테리어		15,400	1,540			목공, 전기, 설비공사 등
주방기기 및 집기	가맹본부	7,700	770	계약 또는	공사/공급 전	냉장냉동고, 튀김기 등
간판	기하는구	4,400	440	물품입고 시	계약취소	간판 사이즈에 따라 변동
초도물품		5,500	550			예상매출액에 따라 조정

- ㅇ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o 기타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철거비, 전기증설, 가스공사, 냉난방기기 및 설치, 전면유리교체 및 돌출간판, 닥트 공사, 순간온수기, 어닝 등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은 일금십만원(₩100,000)<부가세별도>, 서울,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일금이십만원(₩200,000)<부가세별도>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ㅇ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지정→ 가맹희망자 직접조사 또는 가맹희망자 가 전문업체에 의뢰 → 당사 및 가맹희망자가 동의 시 확정

- o 당사는 점포 선정과정에서 귀하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른 추가 발생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o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오토바이 면허 소지자 권장	만18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o 마담떡볶이앤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 ㅇ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광고·판촉 분담기준에 의함	광고 실시 전	광고시행 이전	광고 시행 이후	
판촉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없음	없음	-	-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가맹본부	공사 견적 (개설기준 준용)	공사 진행 시 비용정산	공사 착공 전	공사 대금으로 사용된 비용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교체 및 보수 실비용 정산	교체,보수후 5일이내			교채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 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 여 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4페이지 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ㅇ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등을 점검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 이외의 서비스 취급 여부, 서비스 상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o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위생, 재고관리,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이나 기타 점포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o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별도로 지급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 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마담떡볶이앤치킨]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마음담음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금도 가맹본부에 지급 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계약서 제 36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 ①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즉시 갑의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며(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전 항의 철거ㆍ원상복구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 ③ 을은 본 계약의 종료(계약기간 만료, 해지, 양도 등도 포함한다)시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갑에 게 본 계약과 관련된 투자비용이나 영업권 등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을은 협력업체 또는 "갑"으로부터 지원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한다. 지원받은 품목의 반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갑"에 게 배상하여야 한다.
- ⑤ 을은 이미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원·부재료)을 계약종결을 이유로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단, 상호 협의하여 반환품목을 결정할 수 있다. 결정된 품목은 갑의 사업장소재지로 직접 반환하여야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o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마담떡볶이앤치킨 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마담떡볶이앤치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 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을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마담떡볶이앤치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마담떡볶이앤치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ㅇ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 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지 참조	기재된 제품 이외는 판매 불가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문의 : 당사 (070-8064-8912)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o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o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지정 거래상대방에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해당제품 판매 불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o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o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o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지 참조		홈페이지 또는 공문	

o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②		
중절인 법중 럽귀♡	가맹본부	계열회사	
떡볶이와 치킨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마담떡볶이앤치킨	없음	

o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 마담떡볶이앤치킨을 추가 설치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떡볶이를 전문으로 하는 동일업종의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ㅇ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변경 가능 여부	변경 사유
1만 세대를 기준으로 1개 가맹점을 설치하며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정함	가맹계약서 별지에 기재	가맹점사업자 서면 동의 시	해당없음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 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매저사어자에게 서면 통지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 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 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 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 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마담떡볶이앤치킨'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마담떡볶이앤치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전연도 말 기준 [마담떡볶이앤치킨] 영업표지로 국내에서 판매된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미	H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비중이 기재된 채널은 국내 총 매출액에서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한 비중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오프라인 전용상품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온라인 전용상품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o 마담떡볶이앤치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 부터 1년 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 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ㅇ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조 3항 1번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 하지 아니한 경우	34조 3항 2번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4조 3항 3번 가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4조 3항 3번 나
○ [마담떡볶이앤치킨]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4조 3항 3번 다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 는 제외합니다.)	34조 3항 3항 라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ㅇ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	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4조 가맹점의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11조 영업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14조 인테리어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15조 교육·훈련	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18조 영업의 :	표준화와 판매가격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19조 영업일 -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20조 복장규정	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21조 물품 등	의 주문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26조 광고 및	판촉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27조 보고의무	-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28조 영업비밀	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29조 경업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30조 감독 및	시정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32조 영업의 영	양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 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5조 2항
0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5조 2항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 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5조 2항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5조 2항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5조 2항
0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 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 한 경우는 제외한다.	35조 2항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5조 2항
0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 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 운 경우	35조 2항
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5조 2항

o 귀하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1개월 전에 당사에 계약해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의 종료시까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정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o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8조 2항 1번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조 2항 2번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 여부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ㅇ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o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 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o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능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와 동일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			
업무위탁	불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o 당사는 계약기간동안 귀하가 마담떡볶이앤치킨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비고	
떡볶이, 치킨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 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 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o 당사는마담떡볶이앤치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	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문의: 당사(070-8064-8912)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o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가맹점사업자의 부재 시 당사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공정위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o 당사는 [마담떡볶이앤치킨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할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라그 서거	부담	비율	ᆸ다 저비	비고	
구분	광고 성격	본사	가맹점	분담 절차		
광고	상품광고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없음	제시(명세서)	(전국 행사)	
	할인금액 할인금액 할인행사 (소비자가) (소비자가) 가 50%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판촉행사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n	"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n	n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	라 유동적	n	"	
할인카드.멤 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o 판촉의 경우, 기획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판촉물 구입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o 전국단위 광고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 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1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이 제21조(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제28조(영업비밀유지의무),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 2 손해액의 추정 등'에 의거 규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갑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 무비용을 포함하여 갑이 을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
- ④ 본 계약이 제35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을 또는 을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⑥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⑦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 보상금(지체 일수 × 1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⑧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서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지급한다.
- ⑨ 을이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별첨2 품목을 자점매입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일천만원 (₩10,000,000)을 지급하여야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o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계약서 제공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1)*** 크고의자기 이십시다.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또는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	D-29일(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③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1588-1490,홈페이지:http://www.kofair.or.k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티그저+l④	비용부담	ш¬
사유 ^①	비용항목 ^②	비용비율 ^③	지급절차 ^④	제외사유 ^⑤	비고
ㅇ점포의 시설,	o 간판교체비용	ㅇ점포의 확장	o 가 맹 점 사 업 자	o 점포환경개선	
장비, 인테리어				-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	의 교체비용을	점포환경개선 :			
정되는 경우	제외한 실내건	20%	빙할 수 있는		
ㅇ위생이나 안전		ㅇ점포의 확장			
의 결함으로	되는 일체의	또는 이전을			
인하여 가맹사		수반하는 점포	가맹본부 부담		
업의 통일성을	사업의 통일성	환경개선 :	액을 가맹점사		
유지하기 어렵	과 무관하게	40%	업자에게 지급		
거나 정상적인	가 맹점사업자		(단, 가맹본부와		
영업에 현저한	가 추가 공사		가맹점사업자간		
지장을 주는	를 실시함에		별도의 합의가	. – . – . –	
경우	따라 소요되는		고 · 있는 경우 1년		
	비용은 제외)		의 범위내에서	한 경우에는	
			분할지급 가능)	환수 가능	
			o 가맹점사업자가	_ , , ,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		
			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		
			우에는 점포환		
			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		
			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		
			o 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		

		중사미용글 궁	
		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	
		맹본부 부담액	
		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	
		부터 9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40%)	
		<u> -1 40%)</u>	
	1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해당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o 당사는 마담떡볶이앤치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o 귀하가 마담떡볶이앤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4일	최초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실비	메뉴 및 시스템 변경시, 평가 미달 매장 등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 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5조에 따라 교육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35조에 따라 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의 해지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VAT 미포함)	비고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851-3093)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1670-0007) 또는 가맹거래과(044-200-4943)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원·부재료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주방집기 및 기기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메뉴별 판매가격 >

구분	상품 • 용역명	권장 가격 (단위:원)	위반 시 책임	비고
	로제세트	26,000		
세트	마담세트	24,000		
~11—	기쁨세트	20,000		
	행복세트	24,000		
	로제누들분모자	15,000		
	마담떡볶이	14,000		
	누룽지떡볶이	15,000		
	짜장떡볶이	15,000		
떡볶이 메뉴	사천떡볶이	15,000		
	까르보떡볶이	15,000		
	투움바떡볶이	16,000		
	떡볶이에퐁닭	18,000		
	닭볶음탕	24,000		
	체다치즈	500		
	수제비	2,000		
	메추리알	1,500		
	눈꽃치즈	3,000		
	파채	1,000		
	비엔나	1,500		
	고구마떡	1,500	1회 위반: 서면	
	납작당면	2,000	시정요구	
떡볶이 토핑	오뎅	2,000	2회 위반: 서면	
	베이컨	2,000	시정요구	
	튀김누룽지	1,000	*2회 시정요구에도	
	분모자	2,000	불구하고	
	돈까스	4,500	시정되지 않는 경우	
	라면사리	2,500	최초	
	페퍼로니	2,000	시정 요구한 날부터	
	내우피쉬볼 새우피쉬볼	3,000	2개월 후에 계약해지	
	후라이드치킨	16,000	CTIZ 구에 계기에서	
	양념치킨	17,000		
	매운양념치킨	17,000		
치킨 메뉴	마늘간장치킨	17,000		
	치블링치킨	17,000		
ᄉᄮᅱᆌᄖᆟᆡ	파닭치킨	19,000		
순살치킨 변경시	한마늘간장치킨	17,000		
+1,000원 추가	양념/매운양념/간장/핫간장	17,000		
		500		
	/겨자/머스타드/치킨무 파채+겨자소스	2 000		
		3,000		
	모듬튀김	6,000		
	눈꽃라면땅	3,500		
	순대튀김	4,500		
TOLE 메드	김말이(3개)	2,000		
사이드 메뉴	고구마튀김(3개)	2,000		
	셀프주먹밥	3,000		
	야끼만두(4개)	2,000		
	오징어튀김(2개)	2,000		

and the second s	the second control of	
	찹쌀순대(순대만)	4,000
	야채튀김(2개)	2,000
	치즈볼(4개)	3,000
	케이준감자튀김	3,500
	오뎅튀김(6개)	2,000
	붕아빵(5개)	2,000
	(슈크림,팥 중 택1)	3,000
	왕고구마치즈스틱	3,000
	시원한 얼음컵	500
	소주	3,000
음료	캔맥주	3,000
	콜라 500ml	1,500
	콜라 1.25	2,500



별지 ²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앞 쪽)

			(앞 꼭)			
		가맹금 예치 신청서	처리기간			
		기하며 에서 단하시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상호명(영업표지)	마담떡볶이앤치킨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장미숙				
	주소(사무소)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68, 301호(천호동)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밍	생본부의 계좌					
		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형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성령 제5조의7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5]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mark>가맹희망자 보관용</mark>)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성명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주소							
	제	공	일	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	제	공	장	소			
서	제	공	방	법		☐ 직접 [:]	전달
	제 가 망	공 I 희 밍	받 : 자				(서명 또는 날인)
		Ş			은 가맹본부로 점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수령사실 자필확인란							

*가맹본부 작성 (주)마음담음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	------------

-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mark>가맹본부 보관용</mark>)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성명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주소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 서	제	공	일	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제	공	장	소				
	제	공	방	법	□ 직접전달			
	제 가 망		받 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수령사실 자필확인란								

*가맹본부 작성 (주)마음담음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	------------